

건축관련법규 개정내용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1. 개정취지

화재시 건축물의 각 부재가 화재에 견디는 내력에 대한 각 재료별 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999.5.7 제정,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제3조(내화구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

2. 개정전 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48호, 1998.7.30)

부 위 별		층 별	최상층에서부터 세어서 5층까지	최상층에서부터 세어서 층수가 6층 이상이고 14층 이내	최상층에서부터 세어서 15층 이상
외벽중 비내력벽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1시간	1시간	1시간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		1/2시간	1/2시간	1/2시간
외벽중 내력벽, 칸막이벽, 바닥			1시간	2시간	2시간
기둥, 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붕			1/2시간		

3. 개정후 기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69호, 1999.12.6)

(단위: 시간)

용도		구성부재		벽						보·기둥	바닥 (반자포함)	지붕
				외벽			내벽					
				내벽	비내력		내벽	비내력				
연소 우려 있는 부분 (가)	연소 우려 없는 부분 (나)	세대간 경계벽 (다) 또는 고정 간막이 벽 (라)	샤프 트실 구획 벽 (마)									
용도구분(1)	용도규모(2) [층수(3)/ 최고높이(m)(4)/ 한층 최대 바닥면적(m²)]	초과	3	2	1	3	2	2	3	2	2	
		이하	2	1	½	2	1	2	2	2	1	
		4/20/1200 이하	2	1	½	1	1	1	1	1	1	1
일반 시설	업무·판매·영업시설, 공공 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 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 게·운동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중 매매장, 문화·집회 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위락시설, 묘지관련 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복지시설·자동차관련시설	초과	3	2	1	3	2	2	3	2	2	
		이하	2	1	½	2	1	2	2	2	1	
		3/20/1200 이하	2	1	½	1	1	1	1	1	1	1
주거 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 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의료시설	초과	3	2	1	3	2	2	3	2	2	
		이하	2	1	½	2	1	2	2	2	1	
		3/20/1200 이하	2	1	½	1	1	1	1	1	1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 레기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초과	3	2	1	3	2	2	3	2	2	
		이하	2	1	½	2	1	2	2	2	1	
		-/20/1600 이하	1	1	½	1	1	1	1	1	½	
위험물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초과	3	2	1	3	2	2	3	3	2	
		이하	3	2	1	2	2	2	2	2	1	
		-/20/500 이하	2	1	½	1	1	1	1	1	1	

【비고1】

(1)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바닥면적이 당해 용도에 표시한 한층 최대바닥면적 이상일 경우, 그 용도의 내화시간을 따른다.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용도별 바닥면적이 한층 최대바닥면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갖는 용도의 내화시간을 따른다.

(2)

-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높이 또는 한층 최대바닥면적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따른다.
-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로 한다.

(4) 최고높이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2】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 부분 제외)

(라) 건축법시행령 제53조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 객실간의 간막이벽

(마) 승강기, 계단실 및 설비실의 수직벽 ㉞

— 정보센터 과장 이유식